

청렴시민감사관 운영

평가지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

○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설치근거

| 명 칭 | 설치근거 | 근거종류 | 권한 및 직무범위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청렴시민감사관 |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기준 | 연구원 규정 | 제4조(독립성 등)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자문기구로 그 역할 및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제5조(역할) 1.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2.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시정 요구 3.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·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4. 기타 연구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
※ [별첨3]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기준

<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관련 구체적 근거사항 >

| 문 서 명 | 문서번호 | 시행일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원규공포(청렴시민감사관운영기준 등2건) | 기획311-15-25 | 2015.9.8 |

<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관련 구체적 근거사항 >

| 문 서 명 | 문서번호 | 시행일자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 | 감팀132-15-81 | 2015.9.11 |

** 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(권승돈,이찬구,이상대 등 3인 위촉완료)

※ [별첨4] 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